

제12장 최종 규정

제12.1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12.2조 개정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,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날에 발효한다.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12.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제12.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.

제12.4조 협정의 검토

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에 그리고 그 후 언제든지,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이 협정은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된다.

제12.5조

발효

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제12.6조

종료

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.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2.7조

정본

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